『시·도검도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』

제1장 총칙

제1조 본 규정은 대한검도회(이하"본회"라 칭한다)정관 제39조에 의거 시·도검도회(해외검도회 포함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각 시·도 검도회는 각 시,도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지고 시·도체육회에 각각 가맹하여야 한다.

제3조 각 시·도검도회의 사무소는 각 시·도청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장 권리와의무

제4조 본회에 대한 시·도 검도회의 권리

① 총회에 대의원을 선출,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.
(다만, 해외 검도회는 예외로한다.)

② 본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.

③ 본회가 주최·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.

④ 본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·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.

제5조 본회에 대한 시·도검도회의 의무

① 본회의 제 규정 및 의결된 지시 사항을 준수 하여야한다.

② 각 시·도검도회의 사업계획서, 예산서, 전년도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당해 시·도검도회 정기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기타 조직, 정원, 각종 규정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본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장 임원

제6조 선임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회장 1인
2. 부회장 5인 이내
3. 전무이사 1인
4. 이사 23인(회장, 부회장, 전무이사 포함)이내
5. 감사 2인

제7조 임원의 선임,보선 및 임기는 본회 정관에 규정된 바에 각각 준한다.

제4장 대의원총회

제8조 대의원총회는 본회의 정관에 규정된 바에 준한다. 다만, 대의원 구성에 있어서는 다음에 준한다.

① 당해 시·군·구 단체의 회장 또는 부회장을 총회개최 5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한다. 추천된 대의원이 위 직위를 상실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가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대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검도회 이사회는 검도에 관한 지식,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중앙대의원을 추천할 수 있다. 단, 추천된 대의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.

③ 시·도검도회 소재지의 단체 군별 대의원 각1인 (사회인군, 학교군)

제5장 이사회

제9조 이사회는 본회의 정관에 규정된 바에 준한다.

제6장 부칙

제10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본회 정관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는 것은 본회에서 별도 지시한다.

제11조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